

신영자산운용(주) 정보기술(IT)부문 공시

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 「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」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.

1. 공시 사유

-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

2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

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	정보보호인력비율	정보보호예산비율
총임직원수의 5% 이상 (2.15명)	정보기술부문인력의 5%이상 (0.11명)	정보기술부문예산의 7%이상 (12백만원)

3.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(공시일 현재기준)

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	정보보호인력비율	정보보호예산비율
미충족	충족	충족
4.65%(2명)	50.0%(1명)	7.98%(14백만원)

4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

가. 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

- 신영자산운용은 대고객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제공하지 않으며, 내부 IT업무시스템 또한 외부위탁하고 있어 IT업무시스템의 비중이 낮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.

5.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

-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영위하지 않으므로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미충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6. 금융ISAC(공동보안시스템) 연계여부

- 당사는 현재 금융ISAC와 연계하고 있지 않으나, 차후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금융ISAC와 연계할 예정입니다.

본 공시 화면은 2013년 5월 15일까지 제공하며 공시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본 홈페이지의 [공시]란에서 공시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2013. 4. 30

신영자산운용(주) 대표이사 이상진